

[별지 제1호서식]

임상실습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충북대병원 (이하“임상(현장)실습기관”이라 한다)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 상호 간에 작업치료사 양성과 관련한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2024년 06월 17일부터 2024년 08월 09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재협약을 할 수 있다. 단, 중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관계의 성립) 교육기관의 현장실습 인원, 기간 및 현장실습부서에 대한 현장실습 의뢰 요청에 대해 현장실습 기관이 서면으로 승낙을 통지함에 따라 협약관계가 성립되며 현장실습 기관에서 조건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협약이 성립된다.

제4조(협의사항) 현장실습비용 및 현장실습부서 선정 등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현장실습기관과 교육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현장실습방법) 현장실습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기관과 사전협의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현장실습기관의 의무) ①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지시된 물품의 사용을 허용하며 현장실습생의 실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지도하며 교육기관에서 의뢰한 평가서를 기초로 현장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지켜야 하는 실습기관의 제반 규정에 대해 실습 개시 전에 현장실습생에게 공지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기관의 권리) 현장실습 기관은 현장실습 기관의 방침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현장실습생이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현장실습생 전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현장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8조(교육기관의 의무) 교육기관은 현장실습기관의 방침 및 제반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기관의 제반 규정 (해당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 내용은 현장실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교육기관은 현장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의 지도교수가 실습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에 필요한 다음 물품을 준비하여 현장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가. 실습복장
 - 나. 격리가운 등
4. 교육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에서 금하는 행동(예, 현장실습생이 금속성 물질이나 휴대폰 (촬영 및 녹음금지)을 지참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교육기관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도 직원을 외래강사로 발령하거나 현장 실습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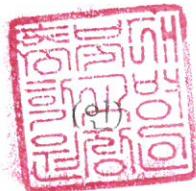
제9조(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른다.

본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현장실습기관과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6 월 17 일

(현장실습기관)

경상대학교병원



대 표

(교 육 기 관)

대구대학교

대 표



(인)